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 박희승·서영교·윤준병

강훈식 • 홍기원 • 김준혁

위성곤 · 김영호 · 신영대

강유정 • 추미애 • 정준호

이성윤 • 박지원 • 소병훈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,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%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,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국고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특히 주로 음식점, 슈퍼마켓,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에서 사용되

어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금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,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소득공제율을 현행 30%에서 50%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).

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5호까지"를 "제5호까지 및 제5호의2"로. "제4호 및 제5호"를 "제4호·제5호 및 제5호의2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·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이하"를 각각 "제5호의2에 따른 지역화폐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. 이 하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"을 "대중교통이용분·도서등사용분 및 지역화폐사용분"으로, "전통시장사 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"을 "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 및 지역 화폐사용분"으로 하고. 같은 항 제5호 중 "직불카드등사용분"을 "직불 카드등사용분, 지역화폐사용분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. 같은 항 제6호다목1)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40 + (최저사용금액 - 신용카드사용분 - 직불카드등사용분 - 도서 등사용분 - 전통시장사용분 - 대중교통이용분) × 100분의 50"으로 하며, 같은 목 2)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40 + (최저사용금액 -신용카드사용분 - 직불카드등사용분 - 전통시장사용분 - 대중교통 이용분) × 100분의 50"으로 한다.

5의2.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

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지역화폐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50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

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현행 과 같음) 략)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-----제5호까지 및 제5호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의2----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 ---제4호·제5호 및 제5호의2-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(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,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.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

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항에서 "전통시장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40(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)

2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 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(이하 이 항에서 "대중교통이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40(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

|    | 제5호의2에 따른 지    |
|----|----------------|
|    | 역화폐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|
|    | 은 제외한다. 이하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0  |                |
| 2.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제5호의2에 따       |
|    | 른 지역화폐사용분에 포함된 |
|    |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  |
|    |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|

| 경우에는 | 100보이 | Q(1)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경子에こ | 100元当 | $\delta (t)$ |

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
(이하 이 항에서 "도서등사용 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30
(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

가. • 나. (생 략)

4.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·대중교통이용 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,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항에서 "직불카드등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3

|    | _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3. |                  |
|    | -제5호의2에 따른 지역화폐사 |
|    | - <del>-</del>   |
|    | 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  |
|    | 다. 이하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   |
| 4.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대중교통이용분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•도서등사용분 및 지역화폐   |
|    | 사용분              |
|    | <u> </u>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      |
|    | 교통이용분 및 지역화폐사용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<u> </u>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|

0

5.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<u>직불카드등사용</u> 분을 뺀 금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이 항에서 "신용카드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15

#### <신 설>

6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,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| 5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J.       | •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직불카드등사용            |
|          | 분, 지역화폐사용분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_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u>5</u> | 의2.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   |
|          |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   |
|          | 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    |
|          | 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    |
|          |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지역화   |
|          | 폐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<u>의 50</u>        |
| 6.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가.·나. (생 략)

- 다.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: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
  - 1)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: 신용카드사용분 × 100분의 15 + (직불카드 등사용분 + 도서등사용 분) × 100분의 30 + (최 저사용금액 - 신용카드 사용분 - 직불카드등사 용분 - 도서등사용분) × 100분의 40

2)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
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
 하는 경우: 신용카드사용
 분 × 100분의 15 + 직불
 카드등사용분 × 100분의

30 + (최저사용금액 -신용카드사용분 - 직불 카드등사용분) × <u>100분</u> 의 40

7. (생략)

③ ~ ⑩ (생 략)

7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⑩ (현행과 같음)